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0-72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6.

발 의 자 : 채우진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8조제2항 중 “5명 이상 10명” 을 “7명 이상 10명” 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5명 이상 10명” 을 “7명 이상 10명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5명 이상 1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<u>7명 이상 10명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